

고성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758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8. 5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2. 8. 9
다. 상정·의결일자 : 2002. 9. 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고성군광고물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을 정함(안제3조,제4조)
-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받을 수 있는자 및 위탁절차, 검사절차등을 정함(안제6조내지제8조)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위탁규정을 정함(안제12조,제13조)
- 옥외광고물설치 허가·신고 수수료를 정함(안제14조)
- 옥외광고물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정함(안제15조,제1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안건은 종전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 됨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 안 제17조에서 일부 권한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안 제17조에서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설명바람.
- 답 : 신고대상 광고물, 예를들어 현수막 같은 경미한 광고물도 군에서 처리할 경우 민원인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대체로 경미한 부분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신고 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것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2. 9.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